

# 서울특별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

(김태수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024
----------	------

발 의 년 월 일 : 2021년 10월 29일  
발 의 자 : 김태수 의원(1명)  
찬 성 자 : 김경영, 김기대, 김기덕,  
김재형, 김제리, 김평남,  
김희걸, 박상구, 송아량,  
장상기, 홍성룡 의원(11명)

##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예술인 창작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예술인의 안정적 활동을 통한 서울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2. 주요내용

- 가.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나.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다. 예술인 창작수당에 및 지급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 라. 예술인 창작수당에 대한 지급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예술인 복지법」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 서울특별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술인 복지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예술인의 복리증진과 안정적인 창작 활동 지원을 통한 서울특별시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예술인 창작수당”이란 예술인의 복리증진과 창작활동 유지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예술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 예술인 창작수당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예술인 창작수당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제5조(지급대상) 예술인 창작수당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증명서를 발급받은 예술인을 지급대상으로 한다.

제6조(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① 시장은 제5조의 지급대상에게 예산의 범위

에서 예술인 창작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술인 창작수당은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제7조(지급신청) ① 예술인 창작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예술인은 시에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② 본인 또는 대리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2호의 서류를 면제할 수 있다.

1.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받은 예술활동증명서
2. 주민등록초본
3. 위임장(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그 밖에 예술인 창작수당의 지급신청, 절차,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지급중지 및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술인 창작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없이 지급된 예술인 창작수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자치구 재정지원) 시장은 예술인 창작수당을 지급하려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예술인 창작수당과 관련한 신청·지급·정산 및 사후관리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서번호

2021102500000010

## 미첨부 사유서 (2호)

요청인 : 김태수 의원

담당 : 조도형 과장  
이원상 팀장  
이혜린 예산분석관

접수일 : 2021.10.25

회신일 : 직접입력

내용문의 : 02-2180-7955

### 서울특별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목 차

1. 비용발생 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3. 미첨부 사유
4. 작성자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Seoul Metropolitan Council

##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은 제6조에서 시장으로 하여금 예술활동증명서를 발급받은 예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 창작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제9조에서 자치구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

##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 3. 미첨부 사유

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제3조제1항제2호)

- 서울특별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은 제6조에서 시장으로 하여금 예술활동증명서를 발급받은 예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 창작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제9조에서 자치구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대상인원 및 창작수당 지급금액의 규모 그리고 지급방법과 지급횟수, 지급시기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비용추계가 어려움

※서울시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서를 발급받은 예술인은 총7만여 명임

참고) 경기도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 비용추계서

### 경기도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 비용추계서

#### 1. 재정수반 요인

-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안 제6조)
  - 예술활동 증명 가능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안 제6조제1항)
  - 지역화폐 지급(안 제6조제2항)
- 지급중지 및 환수 (안 제8조)
- 시·군 재정지원 (안 제9조)

#### 2. 비용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으로 함
- 물가상승률은 반영하지 않음
- 안 제6조에 의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등록된 경기도 예술활동 증명 예술인을 지급대상으로 전제로 하여 비용을 추계함
  -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경기도 예술활동증명 완료예술인 24,255명('21.05.02.기준)
  -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대상은 지급일 기준으로 대상인원 적용 필요
- 안 제6조에 의한 예술인 창작수당 1인당 지급금액 및 지급횟수는 아직 미확정된 상태로 연간 1회 지급을 전제로 하여 추계함
- 안 제8조에 의한 시·군 재정지원은 경기도와 31개 시·군과의 협의를 통해 세부적인 매칭 비율을 확정된 이후 소요 비용 분담액을 산정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비용 추계에서 제외함

### 3. 비용추계의 결과

「경기도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예술인 창작수당 1인당 지급 금액에 따라 2021년에 최소 12,127.5백만원에서 최대 24,255백만원이 추가로 소요되고, 향후 5년간 최소 60,627.5백만원에서 최대 121,275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 이 조례안의 예술인 창작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비정기적 지급을 원칙으로 하나 「경기도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5항에 따라 부득이 5년간을 예시로 추계한 것임.

#### 「경기도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조 례 안	합 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500천원)	60,637.5	12,127.5	12,127.5	12,127.5	12,127.5	12,127.5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600천원)	72,765	14,553	14,553	14,553	14,553	14,553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1,000천원)	121,275	24,255	24,255	24,255	24,255	24,255

\* 경기도와 시·군간 예산 분담비율이 5:5 적용될 경우 소요예산 50%만 부담

- 예술인 창작수당 500천원 지급 시 : 60,637.5백만원

· 예술인 창작수당 : 500,000원 × 24,255명 × 1회 = 12,127.5백만원

○ 예술인 창작수당 600천원 지급 시 : 72,765백만원

· 예술인 창작수당 : 600,000원 × 24,255명 × 1회 = 14,553백만원

○ 예술인 창작수당 1,000천원 지급 시 : 121,275백만원

· 예술인 창작수당 : 1,000,000원 × 24,255명 × 1회 = 24,255백만원

####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도형

추계세제팀장      이원상

주    무    관      이해린

☎ 02-2180-7955

e-mail : lovelyynn91@seoul.go.kr